

17. 홈페이지 관리규정

제정일 : 2007년 9월 12일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(이하“**본교**”이라 한다) 구성원과 지역사회 정보화마인드 확산,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대학교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관리대상) ① **본교** 도메인(Domain) 내에서 **본교**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교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통일된 **본교** 기준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.

제3조 (관리범위) ① 본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정보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**본교** 홍보 관련 사항
2. **본교**의 각종 행사 안내 및 공지사항
3. 각종 규정
4. 교내 구성원 정보
5. 전문학술 및 생활정보
6. 홈페이지상의 문의사항 또는 민원사항 처리
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
다만, **본교** 정책에 반하는 자료나 법 또는 규정으로 정해 보호하는 정보는 제외한다.

② 홈페이지의 유지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기능 개선과 정보를 갱신하도록 한다.

③ 홈페이지 개설 등록과 폐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 홈페이지에 구성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·제시한다.

제4조 (운영) 홈페이지 관리는 사무처에서 담당하며, 실무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 전담 관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5조 (홈페이지 전담관리팀 구성) ① 홈페이지 전담관리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전담관리팀의 팀장은 사무처 전산팀장, 간사는 교무처 선임직원이 되며, 업무군 별 담당자 각 1인과 기술지원 분야별 담당자 각 1인을 위촉한다.

제6조 (회의) 정보수집, 정보교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월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갖도록 하며, 팀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업무처리절차) ① **본교**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기능개선 사항은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한다.

② 공지사항 및 안내 등 게시판에 등재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이외의 자료는 전담관리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.

제8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과 전산관리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